경영유의사항 · 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흥국생명보험㈜
2. 제재조치일 : 2017. 2. 6.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1건, 개선사항 2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대체투자 한도설정 관리 강화

대체투자 한도설정과 관련하여 '15년중 사업부서의 대체투자 수요에 맞춰 한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등 자산편중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었는데,

향후 대체투자 한도 설정시 국내외 금융상황과 회사의 자금운용 계획 및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편중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

나. 개선사항

(1) 대체투자 의사결정기구 구성 개선

대체투자관련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 및 여신위원회의 경우, 자산운용본부 소속 4인과 리스크관리부 소속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, 자산운용본부 소속 위원들의 의사결정만으로 투자의결이 가능하므로

투자위험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자산운용본부 소속 이외의 위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대체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 구성의 객관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(2) 대체투자 관련 심사 및 사후관리조직의 독립성 확보 필요

회사 내규인 「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」에 따르면 대체투자 관련 운용, 심사 및 사후관리조직의 경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

투자운용부서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고, 투자심사부서가 자산운용본부 산하에 있어,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, 향후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분장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